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1070호 2015. 2. 9.(월)

## 차 례

###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 개정규칙 - 1

###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322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훈령 ----- 16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8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33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77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7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88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5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비  
공개 ----- 57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4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하고,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 통합지출관”으로, “채무관리관”을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내지”를 “및”으로 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를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청

가. 징수관 - 총무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무1·2과장,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장

다. 재무관 - 총무국장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마.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사.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아. 부채관리관 - 소관 실·과장
-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 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 카. 지출원 - 경리담당
-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2. 구 의회

- 가. 징수관 - 사무국장
- 나. 재무관 - 사무국장
-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
-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3. 제1관서 (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지정)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자.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

####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채권재무관 - 동장

라.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5조의 제목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재무관의 직무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을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경리관”은 각각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은 각각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명시이월요구서”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산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리관별”을 “재무관별”로,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5항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호 중 “기타 당해”를 “그 밖에 해당”으로 한다.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실·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무1과장과 구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후단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후단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후단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제50조의2의 제목“(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처리)”를“(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권자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하고,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상경비

제52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채주지급액”을 “채권자 지급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5조제1항의 본문 중 “선금급, 도급경비”를 “선금급”으로 하고, “49호의3서식”을 “제49호의4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과년도 지출”을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한다.

제56조 본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9조의2 본문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본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구청 새올 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 내지 제67조를 삭제한다.

제68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 본문 후단 중 “자동이체”를 “즉시이체”로 한다.

제77조제3항 본문 중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를 “계좌로 입금받하고자”로 하고,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입금의뢰서”로 하며,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0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0조 본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3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채주”를 각각 “채권자”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7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23조제1항 본문 중 “검사 또는”을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1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의2의 제목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 제목 “(채무관리관의 장부)”를 “(부채관리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채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부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경리관의 장부)”를“(재무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0조제2항 본문 중 “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채권 및 채무의 관리”를 “채권 및 부채의 관리”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채무의 관리)”를“(부채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채무”를 “부채”로 하며, “총괄채무관리관”을 각각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15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8조 및 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제45호서식부터 제49호의3서식까지, 제50호서식, 제86호서식 및 제87호서식, 제98호서식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신 설)	
<p data-bbox="190 766 940 877">&lt;별지 제49-4호 서식(앞)&gt;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p>	<p data-bbox="1153 718 2060 925">&lt;별지 제49-4호 서식(뒤)&gt; 일상경비 교부명세서 취급자 : (인)</p>



<별지 제90호 서식>

###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출)    국    과

지 급 명 령 번 호 :

지 출 연 월 일 :

구 분	소관별	회계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span>○○ 과장</span> <span>직</span> <span>성명</span> <span>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font-size: 1.2em;"> <span>지출원 (수입금출납원)</span> <span>귀하</span> </div>					
<p>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span>계</span> <span>인</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1.2em;"> <span>지출원</span> <span>인</span> </div> <p>(수입금출납원)</p>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22호

###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폐지훈령

인천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2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1999-80호(1999.06.23)]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4-1473호]한 인천 서구 마전동 산176-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 사업명:당하지구계 가시설철거 및 사면안정화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02. 0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7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사업
  - 명칭 : 당하지구계 가시설철거 및 사면안정화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소2-4호선) B=8m, L=214m 중  
미집행구간 B=2~5m, L=214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5. 3. 1 ~ 2015.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아래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법 제65조 준용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2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2. 0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승학로506번길 91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2. 0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2-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 서구 검암동 662-2	승학로506번길 91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 서구 가정동 30	승학로 195-13	2009-08-28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렀던 승학교개의 이름을 따 명명	
3	인천 서구 연희동 786-6	담지로 24	2011-02-14	심곡천변의 수변공간에서 착안	
4	인천 서구 경서동 947-2	크리스탈로 59	2010-11-05	크리스탈공원의 공원명 반영	
5	인천 서구 경서동 962-13	청라커널로 229-16	2011-06-29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	
6	인천 서구 검암동 615-3	승학로472번길 35	2009-08-28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 서구 경서동 968-9	청라루비로42번길 6-16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 서구 경서동 847-8	청라커널로329번길 3-4	2011-06-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 서구 경서동 963-5	청라커널로 229-9	2011-06-29	청라경관구조 계획에 의거 청라중심에 canal이 있음을 부각	
10	인천 서구 경서동 968-12	청라루비로42번길 6-22	2011-02-14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 서구 심곡동 278-3	탁옥로73번길 35	2008-08-28	탁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 서구 심곡동 327-5	용두산로14번길 5-1	2009-08-28	용두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 서구 오류동 1665-1	원당대로157번길 8	2012-10-25	원당대로의 시작지점부터 1,57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 서구 오류동 1640-10	검단천로 363	2009-09-22	김포시계 검단천에서 시작되어 검단천로로 명명	
15	인천 서구 왕길동 188-11	원당대로507번길 28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부터 5,07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 서구 불로동 563-1	검단로744번길 55-57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부터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 서구 불로동 577-1	검단로744번길 40-64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부터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 서구 당하동 79-9	고산후로78번안길 14-20	2008-12-31	고산후로의78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19	인천 서구 당하동 53	원당대로820번길 62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부터 8,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33호

##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에서 시행하는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1. 26.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시 행 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2014.11.10.~ 2015. 12.3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41번지 일원	L= 400m B= 12m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사업의 근거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07-36호(2007.07.11.)
- 실시계획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4-168호(2014.11.10.)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7호(2015.01.12.)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 4.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15. 01. 28. ~ 2015. 02. 11.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560-4485)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는 2015.03월 이후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하며, 당사자와 보상협약이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입금합니다.
- 협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 용 지 조 서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계				49,196	5,047							
1	불로동	141	141-2	구	1,6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2	불로동	135-3	135-8	과	2,998	44	박경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41-7 신라아파트 1**-7**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89번길 25, 1**동 9**호				
3	불로동	135-4	135-9	전	3,156	260 (1/4)	강혁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4 송도해모로아파트 1**-1***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				
	불로동	135-4	135-9	전	3,156	260 (3/4)	강경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9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				
4	불로동	150-2	150-3	구	145	10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5	불로동	135-5	135-10	답	2,692	172	김경일	김포시 사우동 12**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72-*	김포농업협동조합 (풍무동지점)	김포시 북변동 301-2	근저당 지상권	
6	불로동	151-3		구	238	23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7	불로동	129	129-3	도	2,455	962	국	농림축산식품부					
8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영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동 1***호	검단단위농업 협동조합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1	근저당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3/9)	이정희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수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1**동 2***호				
	불로동	135-7	135-12	답	1,588	158 (2/9)	김영상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4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9	불로동	152-2		구	231	23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0	불로동	156-1		구	2	2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1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영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 2***동 1***호	검단단위농업 협동조합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697-1	근저당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3/9)	이정희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수진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1**동 2***호				
	불로동	135-6	135-11	대	660	179 (2/9)	김영상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37-**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12	불로동	153-2		구	291	29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3	불로동	132	132-2	구	1,041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불로동	154-2		구	17	1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5	불로동	156-2		구	7	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불로동	128-3	128-6	전	5,341	137	맹은숙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동 1***호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24 건영아파트 1**동 1***호				
17	불로동	155-2		구	251	251	삼선태순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7*					
18	불로동	156-3		구	10	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불로동	175-1		구	387	38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0	불로동	128-4	128-7	답	3,536	308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25번길 7*	김포농업협동조합	김포군 김포읍 북변리 289-2	근저당	
21	불로동	128-5	128-8	답	748	152	이한택	김포면 감정리 49*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25번길 7*				
22	불로동	175-3		답	440	4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3	불로동	120	120-2	구	7,011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24	불로동	173-6	173-7	전	1,560	10	김형주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2-2 신명아파트 1**동 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4길 6, 3**호	김형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75길 17, 1**동 6**호	가등기	
25	불로동	185-34	185-44	도	1,624	56	국	건설교통부					
26	불로동	96	96-5	구	9,971	19	국	농림축산식품부					
			96-6	구		102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불로동	313-6	313-15	도	119	19	홍기영	충남 천안시 쌍용동 산44-*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1길 35, 1**동 1***호				
28	불로동	174	174-1	도	987	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 장 물 조 서

[블로동 중3-364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블로동	151-1	조립식 건물	L=14.7~19.3m, B=8.3m [140.7㎡]	1.3㎡	이종미	인천 서구 블로동 15*-*				
2	블로동	135-7	비닐하우스	L=10.0m, B=4.6m [46.0㎡]	2.9㎡	이정희	인천 서구 블로동 13*-*				
			감나무	H=3m, D=3cm	1주						
3	블로동	135-6	회양목	H=1.7m, D=2cm	58주	이정희	인천 서구 블로동 13*-*				
			탱자나무	H=1.8m, D=2cm	50주						
			감나무	H=3m, D=3cm	1주						
			목련	H=4.5m, D=15cm	1주						
			철재간판	H=7m, B=1m	1EA						
			우물	1.2m×1.2m	1EA						
			울타리	H=1.5m, L=4m	1식						
4	블로동	152-3	컨테이너	L=12.3m, B=4.9m [60.3㎡]	1동	이종미	인천 서구 블로동 15*-*				
			철재대문	H=1.9m, L=8.5m	1식						
5	블로동	155-2	비닐하우스	L=12.0m, B=3.1m [37.2㎡]	37.2㎡	김종학	인천 서구 블로동 신명아파트 1**동 1***호				
6	블로동	132	강봉간판	H=1.5m	1EA	별빛교회	인천 서구 대곡동 38*				
7	블로동	132	강봉간판	H=1.5m	1EA	신일금속	인천 서구 대곡동 385-*				
8	블로동	153-2	강봉간판	H=1.4m	1EA	국제냉동기	인천 서구 대곡동 449-**				
9	블로동	153-2	목재간판	H=1.5m	1EA	다사랑유치원	경기 김포시 감정동 25*				
10	블로동	155-12	철재간판	H=7m, B=1.1m	1EA	다사랑유치원	경기 김포시 감정동 25*				
11	블로동	128-3	강봉울타리	H=1m, L=45m	1식	김종학	인천 서구 블로동 신명아파트 1**동 1***호				
12	블로동	129	강봉간판	H=1.7m	1EA	별빛교회	인천 서구 대곡동 38*				
13	블로동	129	강봉간판	H=4.5m	1EA	진산각	경기 김포시 감정동 274-**				
14	블로동	129	강봉간판	H=1.7m	1EA	우리집식당	인천 서구 블로동 135-*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7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부담률과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 감량효과를 고려한 적정 수수료가 산정
-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처리수수료(무게 및 부피에 따른 기준 금액) 조정 [안 제10조]
  - 무게 40.32원 → 80원/kg, 부피 31원 → 60원/ℓ
- (별표3)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정비 [안 제10조]

### 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용기	60	3,600	
	120	7,200	

###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전용봉투	20	1,200	

-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용 봉투 신설 [안 제11조]
  - : 무단투기 및 일시적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등 수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410, 팩스 560-276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b>자 치 법 규 명</b>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개 정 이 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부담률과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li> <li>○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 감량효과를 고려한 적정 수수료가 산정</li> <li>○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li> </ul>																										
<b>주 요 내 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처리수수료(무게 및 부피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 [안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게 40.32원 → 80원/kg, 부피 31원 → 60원/ℓ</li> </ul> </li> <li>○ (별표3)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정비 [안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납부필증 가격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 분</th> <th style="padding: 5px;">표시용량(ℓ)</th> <th style="padding: 5px;">가격(원)</th> <th style="padding: 5px;">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padding: 5px;">개별용기</td> <td style="padding: 5px;">3</td> <td style="padding: 5px; color: blue;">180</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5</td> <td style="padding: 5px; color: blue;">300</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padding: 5px;">공동배출용기</td> <td style="padding: 5px;">60</td> <td style="padding: 5px; color: blue;">3,600</td> <td></td> </tr> <tr> <td style="padding: 5px;">120</td> <td style="padding: 5px; color: blue;">7,200</td> <td></td> </tr> </tbody> </table> </li> <li>나. 전용봉투 가격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5px;">구 분</th> <th style="padding: 5px;">표시용량(ℓ)</th> <th style="padding: 5px;">가격(원)</th> <th style="padding: 5px;">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전용봉투</td> <td style="padding: 5px;">20</td> <td style="padding: 5px; color: blue;">1,200</td> <td></td> </tr> </tbody> </table> </li> </ul> </li> <li>○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용 봉투 신설 [안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단투기 및 일시적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등 수거</li> </ul> </li> </ul>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용기	60	3,600		120	7,200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전용봉투	20	1,200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용기	60	3,600																									
	120	7,200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고																								
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전용봉투	20	1,200																									
<b>개 정 안</b>	“별지 참조”																										
<b>신·구조문대비표</b>	“해당 없음”																										
<b>관계 법령 발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li> <li>○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12.11)</li> </ul>																										
<b>관련 사업 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8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결과 : 총무과-27536(2014. 9. 26)</li> </ul>																										
<b>예 산 수 반 사 항</b>	“해당 없음”																										
<b>기타 참고 사항</b>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40.32원”을 “80원”으로, “31원”을 “60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 음식물봉투(분홍색)」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10조제3항 관련)

## 가. 납부필증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개별용기	3	180	
	5	300	
공동배출 용기	60	3,600	
	120	7,200	

## 나. 전용봉투 가격

구 분	표시용량(ℓ)	가격(원)	비 고
음식물류 폐기물 (김장쓰레기) 전용봉투	20	1,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생략)</p> <p>③ 수수료는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부피(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 고지 및 충전카드 인출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무게에 의한 경우 킬로그램당 40.32원, 부피에 의한 경우 리터당 31원으로 하고,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p> <p>④ ~ ⑥ (생략)</p>	<p>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80원----- ----- 60원----- ----- -----.</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② (생략)</p> <p>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며, 김장철 등 일시적 다량 배출시기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작·보급토록 한다.</p>	<p>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하며,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 음식물봉투(분홍색)」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p>

## 관계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2. 11)

###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RFID 기반방식 또는 칩(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IV. 세부 시행지침

#####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효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나. 종량제방식의 적용방법

###### 2) 칩(스티커) 방식

-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단독주택 개별용기 및 공동주택 거점용기에 적용 가능
-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12.6.8)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

#### □ 위생관리 필요성

-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외관불결·악취발생·세균오염 가능성이 크고, 수거용기의 세균은 손·신발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미생물 조사결과 일반세균 100%, 총대장균 78%, 대장균 31% 검출 ( '11.8월 국립환경과학원)
-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후에는 내·외부의 미생물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위생적 관리 필요
  - ※ 세척 및 소독 후 일반세균의 개체 수 조사결과 총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제거율이 모두 100%로 나타남 ( '12.2월 국립환경과학원)

#### □ 위생관리 방향

- 지자체가 월 2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토록 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토록 함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육안관찰·관능검사 결과 청결·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세척이 필요
- ※ 전용용기는 3일이 경과하면 **외관이 불결**(육안관찰)해지고 5일이 경과하면 **악취 발생**(관능검사) ('12.1. 국립환경과학원)

#### □ 위생관리 대상, 주기 등

-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 주체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함(아파트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가 청소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지자체는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위생관리 주기 : 월 2회 이상 실시(하절기(6월~9월)에는 주1회 이상)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 시 부피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사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 종량제방식별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x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 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다량 배출원으로부터 자발적 감량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적용

예시) 세대당 수수료 부과기준

세대당 배출량/월	20kg 이하	20kg이상 30kg 이하	30kg이상
부과금액(원/kg)	80원	100원	120원

※ 배출구간별 세대수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부담률 향상계획을 고려하여

수수료 가산비율을 결정하고 수수료 산정시 반영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광역시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시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7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2. 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의 세부사항을 정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 정비(안 제8조)
  - “별표 4” 정비
    - 납부필증, 전용봉투 판매가격 ⇒ 조례 판매가격과 일치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조달가(매년 1월1일 조달청 판매금액으로 일치)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410, 팩스 560-276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 용기 판매수수료의 세부사항 정비
주 요 내 용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 용기 판매수수료 정비 [안 제8조] - 별표4 정비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참조”
관계 법령 발취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12.11)
관련 사업 계획	○ 2014년 8월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결과 : 총무과-27536(2014. 9. 26)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4]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나.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

다.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

구분	규격	판매가격(원)	공급가격(원)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 ℓ	조례 “별표3”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7	
	5 ℓ			7.5	
	60 ℓ			7	
	120 ℓ			7	
전용봉투	20 ℓ			7	
전용수거용기	3 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 ℓ			1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4]</b></p> <p style="text-align: center;"><b>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 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규격</th> <th>판매가격</th> <th>공급가격</th> <th>판매수수료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납부필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3ℓ</td> <td style="text-align: right;">10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93</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 style="text-align: right;">16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48</td> <td style="text-align: center;">7.5</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right;">1,86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730</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right;">3,72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3,460</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20ℓ</td> <td style="text-align: right;">620원</td> <td style="text-align: right;">577</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용수거용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3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판매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판매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100원	93	7		5ℓ	160원	148	7.5		60ℓ	1,860원	1,730	7		120ℓ	3,720원	3,460	7		전용봉투	20ℓ	620원	577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p><b>[별표4]</b></p> <p style="text-align: center;"><b>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 판매수수료(제8조제3항 관련)</b></p> <p style="margin-top: 10px;">가.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전용수거용기 판매가격은 조달가+판매수수료로 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p> <p style="margin-top: 10px;">나.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input type="checkbox"/>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공급가격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 소수점이하 올림  <input type="checkbox"/> 전용수거용기 공급가격 : 조달가(매년 1월 1일 조달청 판매금액)</p> <p style="margin-top: 10px;">다. 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판매수수료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규격</th> <th>판매가격 (원)</th> <th>공급가격 (원)</th> <th>판매수수료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납부필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3ℓ</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조례 "별표3" 준용</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7.5</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0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봉투</td> <td style="text-align: center;">20ℓ</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용수거용기</td> <td style="text-align: center;">3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판매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ℓ</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판매수수료</td> <td style="text-align: center;">조달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규격	판매가격 (원)	공급가격 (원)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조례 "별표3" 준용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7		5ℓ	7.5		60ℓ	7		120ℓ	7		전용봉투	20ℓ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구분	규격	판매가격	공급가격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100원	93	7																																																																															
	5ℓ	160원	148	7.5																																																																															
	60ℓ	1,860원	1,730	7																																																																															
	120ℓ	3,720원	3,460	7																																																																															
전용봉투	20ℓ	620원	577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구분	규격	판매가격 (원)	공급가격 (원)	판매수수료율(%)	비고																																																																														
납부필증	3ℓ	조례 "별표3" 준용	판매가격 - (판매가격 × 판매수수료율)	7																																																																															
	5ℓ			7.5																																																																															
	60ℓ			7																																																																															
	120ℓ			7																																																																															
전용봉투	20ℓ			7																																																																															
전용수거용기	3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5ℓ	조달가+판매수수료	조달가	10																																																																															

## 관계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환경부, 2012. 11)

## I.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00년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
-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

## II.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III.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 동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 수수료 요금현실화를 위해 주민부담률을 매년 상향 조정하되,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함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 종량제봉투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지역외의 장소에서 종량제봉투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종량제봉투 방식을 '15년 6월 까지 단계적으로 RFID 기반방식 또는 칩(스티커)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수수료 종량제방식에 기초하여 배출, 수집·운반업무에 표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용함

#### IV. 세부 시행지침

#####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관한 사항

###### 가.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은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나. 종량제방식의 적용방법

###### 2) 칩(스티커) 방식

-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배출횟수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
  - 단독주택 개별용기 및 공동주택 거점용기에 적용 가능
-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사료·퇴비)의 품질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금지하고, 전용용기 등 환경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 유도토록 조정 (국가정책조정회의 '12.6.8)

#####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위생관리

###### □ 위생관리 필요성

-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외관불결·악취발생·세균오염 가능성이 크고, 수거용기의 세균은 손·신발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미생물 조사결과 일반세균 100%, 총대장균 78%, 대장균 31% 검출 ( '11.8월 국립환경과학원)
-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후에는 내·외부의 미생물이 대부분 제거되므로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위생적 관리 필요
  - ※ 세척 및 소독 후 일반세균의 개체 수 조사결과 총 대장균군과 대장균의 제거율이 모두 100%로 나타남 ( '12.2월 국립환경과학원)

###### □ 위생관리 방향

- 지자체가 월 2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토록 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토록 함

-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대한 육안관찰·관능검사 결과 청결·악취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주 1회 이상 세척이 필요  
 ※ 전용용기는 3일이 경과하면 외관이 불결(육안관찰)해지고 5일이 경과하면 악취 발생(관능검사) ('12.1. 국립환경과학원)

□ 위생관리 대상, 주기 등

- 대상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 주체 :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 등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정함(아파트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가 청소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지자체는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위생관리 주기 : 월 2회 이상 실시(하절기(6월~9월)에는 주1회 이상)

###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의 원칙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산정
- 수수료 산정기준은 무게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피단위 종량제 시행시 부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 부피환산계수는 1년 주기로 적합성을 평가(지역 내 표본지역 대상)
- 특광역시자치단체는 지역 내의 사구군에 대하여 부피환산계수를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음

#### 나. 주민부담률 산정기준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 종량제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합계 ÷ 종량제방식별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합계 x 100
- 종량제방식별 봉투, 칩, 납부필증 등의 선납부 수수료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판매수입으로 산정

#### 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종량제방식별로 산정
- 종량제방식별 단위무게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
  -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 kg당 수집·운반·처리비용 x 발생량 x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목표치)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정착을 위해 주민부담률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 함
- 수수료의 현실화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 현재를 기준으로 '13년 말까지 현재의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고, 매년 상향 조정하여 특광역시는 '15년까지, 일반 시는 '16년까지, 도농 통합 시는 '17년까지, 군 지역은 '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달성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

(%)

구 분	'10년 (기준)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0	50	60	70	80	80	80
도농 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0	30	40	50	60	70	80

- 도시유형별로 상·중·하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높게,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낮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가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지자체는 동 가이드라인(안)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주민부담률 목표치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례에 반영하여야 함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고,, 지나치게 낮은 주민부담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다량 배출원으로부터 자발적 감량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차등 부과제 적용  
예시) 세대당 수수료 부과기준

세대당 배출량/월	20kg 이하	20kg이상 30kg 이하	30kg이상
부과금액(원/kg)	80원	100원	120원

※ 배출구간별 세대수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부담률 향상계획을 고려하여 수수료 가산비율을 결정하고 수수료 산정시 반영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방법

- 적정 수수료의 부과는 해당 자치단체별 여건(수집·운반 및 처리)이 다르므로 자치단체별로 원가 산정 후 정하도록 함
- 지자체별 수수료의 편차가 클 경우 주민들 간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특.

광역자치단체 내의 시, 구 지역은 동일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특광역  
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음

-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13년 6월1일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88호

「인천광역시서구 공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2. 9.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변경

#### 2. 주요내용

-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 변경(안제3조 및 별표3)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신설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민원봉사과, 전화 032-560-4250, 팩스 032-560-28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서구공인조례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리하게 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소속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민원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와 같이 해당부서 소속과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는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함께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인의 등록·재등록은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

**제7조(공인대장)** ①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과에 신청 및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주관과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문서업무 주관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등록일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고)** ①구청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을 기록정리하여 영구 보존하고, 그 공인을 인천광역시서구기록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는 해당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보관자)** ①공인보관자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②공인보관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보관 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날인 위치 등)** ①공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발급·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그 밖에 공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 [별표 3] (제4조 관련)

(단위 : cm)

구		분	한변의 길이	비고
청 인	합의제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3.6cm	
직	기 관 의 장 인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cm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	
		·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	
인	회 계 관 계 직 인	·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2.0cm	
		·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1.8cm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205호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비 공개

1. 지정은행 : (주)신한은행
2. 계약기간 : 2015.1.1 ~ 2018.12.31(4년)
3. 계약방식 : 공개입찰경쟁
4.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기금
5. 구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
  -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구금고 협력사업비
  - 5억원